

[사 건 명] 행심 2015-31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5일 등』 처분을 취소하고, 『교내 봉사 3일 (1일 2시간)과 청구인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5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 개요

가. 청구인 ○○○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폭력에 대해 2015. 7.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15. 7.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특별교육 5일 및 청구인의 부모에게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5. 7. 10.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5. 10.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학교폭력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자치위원회에서까지 청구인을 가해자로 설정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 측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결국 청구인을 치료비 보상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청구인이 ○○○ 학생에게 한 폭력은 인정하지만, ○○○이 먼저 청구인에게 한 언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는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과의 형평상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학교폭력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자치위원회에서 까지 청구인을 가해자로 설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 이 사건으로 강한 충격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것이며,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 측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청구인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은 자치위원회에서는 치료비 보상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다.
- 나. 청구인이 ○○○ 학생에게 한 폭력은 인정하지만, ○○○이 먼저 청구인에게 한 언어·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는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과의 형평상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과의 평소 관계, ○○○의 청구인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태도, 청구인에 대한 폭력의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이 사건 사고는 2015. 6. 19. 경 청구인이 학습지를 빌리러 2-7반 교실로 갔고, ○○○이 청구인에게 다가와서 물을 튀기고, 어깨를 밀치며 장난을 쳤다.
- 2) 청구인은 ○○○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실내화를 ○○○에게 날렸고, 실내화를 맞은 ○○○은 청구인의 실내화를 창밖으로 던졌다.
- 3) 청구인이 ○○○에게 실내화를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이 이를 무시하자, 청구인은 ○○○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쳤고, ○○○은 머리를 벽에 부딪쳐서 일시 기절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학교폭력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자치위원회에서 까지 청구인을 가해자로 설정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 측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결국 청구인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청구인이 ●●●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자치위원회의 회의 내용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만큼, 조사 과정이나 자치위원회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 학생에게 한 폭력은 인정하지만, ●●●이 먼저 청구인에게 한 언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는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과의 형평상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치위원회에서 ●●●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에 대하여 가한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없어질 수 없는 만큼, 형평상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과 ●●●은 서로 장난 하면서 지내온 사이인 점, 이 사건은 ●●●이 먼저 원인 제공 한 점, ●●●의 원인 제공에 대하여는 조치가 없었던 점, 청구인의 우발적 행동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두 학생은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라) 위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3일(1일 2시간) 및 청구인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으로 조치하기로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